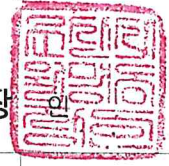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4월 15일

월명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나	최 *나 1990-04-25	전라북도 군산시 둔율1길 (둔율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4-15